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·훈련과정 운영규정

◇ 제·개정 이유

행정규칙 존속기한 도래 및 존속 필요성 검토에 따라 교육환경 변화 등 시대적 요구를 감안한 용어 정의 및 교육훈련 선발 투명성 제고, 대원의 특수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 설계를 위해 전부 개정함

◇ 주요내용

- 가. 교육·훈련, 교수요원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행정규칙의 체계적 정립을 도모함(안 제2조)
- 나. 종전의 훈련과정운영위원회의 구성, 기능에 대한 보완 개선을 통해 교육훈련 개선,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의결기구를 구성함(안 제4조)
- 다. 교육훈련 과정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신설하여 교육수혜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자함(안 제5조)
- 라. 교수요원 지정, 위촉, 실적관리, 우대방안 등 교수활동 장려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하고자함.(안 제8조)
- 마. 기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지도, 성적평가 개선 및 교육훈련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함.(안 제17조, 18조, 제21조 등)